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1100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

피고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유희

변론 종결2024. 10. 30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천안시 서북구 D 답 248m²에 관하여 2023. 3. 22. 피고 B과 E(F 생, 이하 같다)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과, 천안시 서북구 G 답 377m²에 관하여 2023. 3. 22. 피고 C와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 및 E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약정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

1) 원고는 E과 2003. 5. 1. 혼인신고를, 2020. 11. 30. 협의이혼신고를 각 마쳤다(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호협1156호).

2) 원고는 2023. 4. 27. E을 상대로 E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답 248㎡(이하 '제1토지'라 한다) 및 천안시 서북구 G 답 377㎡(이하 '제2토지'라 하고, 제1, 2토지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08605호), 위 법원은 '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0. 8. 15. 재산분할약정(이하 '이 사건 재산분할약정'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'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제1심판결은 2024. 2. 28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들 및 E의 각 매매계약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

1) 피고 B 및 E의 매매계약 등 가) 피고 B은 2023. 3. 22. E과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제1매매'라 한다).

나) 제1토지에 관하여,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2023. 5. 8. 피고 B의 E에 대한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단10880호), 2023. 5. 8. 위 결정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.

다) 피고 B은 2023. 9. 21. E을 상대로 제1토지에 관하여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19100호), 위 법원은 2024. 6. 25. 'E은 피고 B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'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제1심판결은 2024. 7. 11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2) 피고 C 및 E의 매매계약 등 가) 피고 C는 2023. 3. 22. E과 사이에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

체결하였다(이하 '제2매매'라 하고, 제1, 2매매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매매'라 한다).

나) 제2토지에 관하여,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2023. 5. 10. 피고 C의 E에 대한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단10881호), 2023. 5. 11. 위 결정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.

다) 피고 C는 2023. 9. 21. E을 상대로 제2토지에 관하여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19094호), 위 법원은 2024. 4. 24. 'E은 피고 C에게 제2토지에 관하여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'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제1심판결은 2024. 5. 10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.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, E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.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채권자취소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3. 판단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(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7905

판결 등 참조),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56690 판결,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2534 판결, 1996. 9. 20.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).

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권리는 E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바, 위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이므로,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(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를 E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선택하더라도, 원고의 E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매매와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인 사해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).

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강진명